

[별표 3] <개정 2023. 6. 30>

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등(제15조 관련)

1. 수련활동 : 1일 1명 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25세 이상	16세 이상 24세 이하 (고등학생·대학생 적용)	15세 이하 (초등학생·중학생 적용)
생활관 이용료(1박)	10,500	8,200	8,000
식비(3식)	16,800	14,400	13,500
수련활동지도비	-	5,000	5,000
시설 이용료	4,700	4,000	4,000

※ 비고

- ① 초등학생·중학생·고등학생·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위의 이용료 적용
- ② 생활관 이용료 1박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
- ③ 기본식단 외 별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추가요금 적용
- ④ 수련활동지도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는 감면
- ⑤ 시설이용료에는 강당, 다목적 운동장 이용 포함
- ⑥ 선택형으로 특별프로그램 이용 가능

2. 수영장 및 썰매장

(단위 : 원)

구 분		25세 이상	16세 이상 24세 이하 (고등학생·대학생 포함)	8세 이상 15세 이하 (초등학생·중학생 포함)	36개월 이상 7세 이하
1개 시설 이용 시	수영장	8,000	7,000	6,000	5,000
	썰매장	10,000	9,000	8,000	7,000
2개 시설 동시 이용 시		16,000	14,000	12,000	10,000

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※ 비고

- ①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위의 이용료 적용
- ② 20명 이상 일시 이용할 경우(주중 한정) 1,000원 감액
- ③ 생활관 이용자(숙박 이용자)가 이용할 경우 1,000원 감액
- ④ 용인시민(관내 거주지 소재 단체 포함)이 이용할 경우 2,000원 감액
- ⑤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액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

3. 인조잔디 운동장

(단위 : 원)

구분	일반이용 (30명 미만)		단체이용 (30명 이상)		라이트 시설 이용	비고
	평 일	휴 일	평 일	휴 일		
운동장	40,000	50,000	150,000	200,000	25,000	

※ 비고

- ① 일반이용(축구동호회 등 30명 미만)은 1회 2시간 기준
- ② 단체이용(체육·경기·행사 등 30명 이상)은 1회 4시간 기준
- ③ 라이트시설(조명탑) 이용(야간 18시 이후)은 1회 30분 기준
- ④ “휴일”이란 토요일,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),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- ⑤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. 다만, 초과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.

4. 야영장

(단위 : 원)

시설명	구분	이용시간	이용료				비고
			성수기(7월~8월) 및 주말		비수기 평일 (9월~다음해 6월)		
			다른 지역 주민	용인 시민	다른 지역 주민	용인 시민	
야영장	데크 (4m×5m)	개소/1일	25,000	20,000	20,000	10,000	
	데크 (5m×7m)	개소/1일	30,000	25,000	25,000	15,000	

- ※ “주말”이란 토요일,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), 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한다.